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6차)

1.일 시	2023년 10월 20일(금) 15시 30분	2.장 소	9동 1층 회의실
3.참석자	백 , 김 , 김 , 노 , 전 , 영 , 이	4.불참자	이 , 이
5.안 건	1) 2023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2) 임의특정목적기금 목적 변경(안) 심의		

### 회의 내용

위 원 장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사립학교법 제29조·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의거하여 2023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임의특정목적기금 목적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였음을 설명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함.

**(제 1의 안) 2023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위 원 장 : 2023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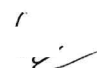

주무부서 : 2023학년도 2차 추경예산 세입을 설명함. 학교기업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임의특정목적기금인출수입 251,000천원 증액 편성함을 설명함.

2023학년도 2차 추경예산 세출을 설명함. 학교기업전출금 251,000천원 증액과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사업비 총액 1,977,651천원의 전체 금액은 동일하며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편성함을 설명하며, 세입·세출 각 1차 추경예산 대비 251,000천원 증액된 66,464,292천원으로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설명함.

위 원 :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 편성에 대해 질의함.

주무부서 :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의 경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라 방사선(학)과, 임사병리(학)과 프로그램 계획 변경에 맞춰 전문기술석사운영센터의 변경(안)을 통해 반영한 사항이며, 총 사업비는 1차 추경예산과 동일함을 설명함.

위 원 :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당부함.

간서명 - 위원 : 김 	위원 : 노 	위원 : 영 
--	---	--

(제 2의 안) 임의특정목적기금 목적 변경(안) 심의

위원장 : 임의특정목적기금 목적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

주무부서 : 김 팀장은 인건비보조기금에서 마련될 2023학년도 임의특정목적기금 인출재원 부족 및 2024학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적립금 내 목적 변경임을 설명하며, 現 임의특정목적기금 내 시설운영기금에서 인건비보전기금으로 적립금의 목적 변경을 진행하고, 이 중 학교기업 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251,000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인건비보전기금으로 변경할 계획임을 설명함.

위원 : 동일한 임의특정목적기금임에도 목적을 별도로 정해야하는지 질의함.

주무부서 : 임의특정목적기금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목적을 세목으로 구분 적립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음을 설명하고, 적립금 사용 용도 변경 사유에 따라 적절한 목적으로 예산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을 답함.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함.

위원 : 추가 의견 없음을 답함.

위원장 : 2023년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한 2023년도 교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임의특정목적기금 목적 변경(안) 심의 모든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학교 측 김 위원, 학생 측 노 위원, 외부인사 영 위원을 3인을 간서명자로 할 것을 제안함.

위원 : 위원 모두 동의함.

위원장 :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함.

위 심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함

2023년 10월 20일

위원장 : 백

부위원장: 김

위원 : 김

위원 : 영

위원 : 이

위원 : 이

① 불참

위원 : 노

위원 : 전

위원 : 이

① 불참